

	<h2 style="margin: 0;">교원인사규정</h2>	규정번호	3-3-5
		제정일자	2005.01.25.
		개정일자	2020.09.01.
		개정차수	14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행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 학교법인 새빛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이 정하는 교원은 일반 전임교원 및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과 강사로 구분한다. 다만,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전담영역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은 직무의 일부인 강의를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 또는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인으로서 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교원으로 구분한다.

③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④ 제1항의 교원 외에 초빙교원, 산업체겸임교원, 특임교원, 객원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담영역별 전임교원에 관한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③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경직금지) 전임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은 경우나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5조(정년) ① 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전임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제6조(정년보장교원임용) 정년보장교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정관 제40조 6에 의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7조(신규교원의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다.

제8조(신규교원의 임용 및 방법) ①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임용 시기는 매학기 개시이전으로 하되, 결원보충은 사유발생시 수시로 임용할 수 있다.

③ 타 대학에서 퇴직한 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 할 수 없다.

④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교원, 조교 경력만으로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임용 할 수 없다.

제9조(신규임용절차) ① 신규임용 전임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계약제로 임용한다.

②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발령장을 교부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③ 신규임용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제출 한다.

④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⑤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원자에 대한 평정은 [별표4]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⑥ 신규임용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신규임용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한다.

제10조(연구 경력 및 교육경력 연수 환산) 연구 및 교육경력 연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동일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상위순에 따라 하나만 인정하고 중복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2년까지 인정한다.
2.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3년까지 인정한다.
3. 석사, 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한다.
4. 상기 1호 내지 2호는 원칙적으로 정규 대학원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말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적용한다.
5.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초급)대학 전임교원의 재직 연수는 100%, 겸임교원의 재직 연수는 전임교원의 50%를 인정한다.
6.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공공 연구기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 인정한다.
7.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초급)대학의 시간강사 재직 연수는 주당 3시간까지는 20%, 3시간을 초과할 때는 시간당 5%씩 가산하여 최고 70%까지 인정한다.

제11조(특별채용) 전임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0조의 5에 의한다.

제3장 승진임용

제12조(승진임용) ① 교수 및 부교수로의 승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전임교원의 승진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③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재직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6년
2.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7년

④ 정관 제41조 제2호, 제3호 내지 제6호의 휴직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승진 소요 연수는 현직급 임용일 부터 계산한다.

⑥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 직급에서 연구 발표한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2. 현 직급 임용기간 내 전공과 관련 있는 기관 및 산업체에서 7일 이상 연수한 실적

제13조(승진임용절차 및 방법) ①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절차는 [별표8]과 같다.

② 전임교원의 승진 임용시 승진대상자에 대해 현직급 임용기간 중의 교원승진(재임용) 평정표 [별표12]를 총점 100점으로 하여, 다음의 성적 이상인 자에 한하여 승진임용한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 83점

2.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83점으로 하되 정관 제40조의 6(정년보장교원의 심사)에 의한다.

제14조(승진임용의 발효)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15조(승진임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다.

1. 휴직중인 자

2. 정관 제62조에 의한 징계처분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장 재임용

제16조(재임용대상자격) 전임교원의 재임용 대상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 임용기간 내 연구 발표한 100%이상의 연구실적물

2. 현 임용기간 내 전공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산업체에서 7일 이상 연수한 실적

제17조(재임용절차 및 방법) ① 전임교원의 재임용절차는 [별표9]와 같다.

② 전임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③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승진(재임용)평정표[별표12]에 따라 평정한 결과가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인 자로 하며, 평정기간은 현 직급 임용기간으로 한다.

④ 재임용 대상 전임교원의 재직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에는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고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⑤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수 : 정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7년

3. 조교수 : 6년

⑥ 재임 중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한다.

⑦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 임용여부를 통보 한다.

⑧ 임용기간 만료전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는 임용장에 정년시(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학기말 기준)까지만 임용함을 명시 한다.

제18조(재임용의 발효) 전임교원의 재임용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하고 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19조(재임용의 제한) 휴직 중인 자로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제20조(호봉 확정) 전임교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3]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연수에 공무원 보수 규정[별표24]의 연수를 가감한 후 동 규정 [별표26]에 의한 기산호봉을 합산하여 확정한다.

제21조(승급) ① 전임교원의 호봉 승급은 12개월마다 1호봉씩 승급하되 승급일은 매월 1일자로 승급 한다.

②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인 전임교원은 당해 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정지되며 사유가 종료 되는 날의 다음달 1일자부터 승급기간에 산입 한다.

제22조(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제5장 교원인사위원회

제23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기능, 조직, 및 직무 등은 정관 제7장 1절 3관에 의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6장 연구실적

제24조(연구실적 인정범위) ① 연구실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교양 잡지,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다만, 안산대학교 출판물규정 및 전자출판물에 의해 개발된 저서는 인정함)
2. 학회 및 대학논문집
3. 정기간행물(학술지로 공인 받은 것에 한함)
4.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창작, 발표, 전시, 입상 등을 말한다.

② 연구실적의 인정은 [별표14]를 따른다.

제25조(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5. 석사학위 취득 논문 : 100%
6. 박사학위 취득 논문 : 200%

제26조(연구실적물의 사용) 승진 소요기간 내에 재임용을 받은 경우, 재임용 때 사용한 연구실적물 중에서 승진 소요기간 내에 해당되는 실적물은 승진시 재사용 할 수 있다.

제7장 보 직

제27조(보직자의 자격) 보직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28조(보직자의 임면) 보직이라 함은 대학의 직제규정 제4조에 명시된 각 조직 및 그 외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립된 조직의 장을 말하며, 총장이 임면한다.

제28조의2(보직자의 임무 및 권한) 보직자는 자율성과 책무성의 범위 내에서 대학 각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9조(보직의 임기) 전조에 열거한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보직의 겸임) 총장은 전임교원에게 보직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보직해임) 총장은 제29조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직자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업무 수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제32조(보직제한) 학과장의 보직임명은 대학 부임 후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임명한다. 다만,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8장 휴 직

제33조(휴직) ① 휴직에 대한 사유, 휴직기간, 휴직교원의 신분 및 휴직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제7장 제1절 제2관에 의한다.

② 전임교원의 휴직은 학기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전임교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한 폐직이나 조건부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교원은 권고에 의한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전임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직위해제 및 해임) 직위해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5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장 복 무

제36조(연구학기제운영) ① 전임교원의 실무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 및 산업현장 또는 연구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연수 할 수 있다.

② 연수방법, 절차 및 처우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책임시간 및 외부출강) ① 전임교원은 강의시간표작성규정에 의거하여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원이 타대학(타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외부대학(기관) 출강허가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일을 활용하여 출강하도록 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38조(표창의 구분) 표창은 근속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제39조(근속상) ① 근속상은 10년, 20년, 30년 근속으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근속기간 산출은 초임 연월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0조(공로상) 전임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창의적 제안으로 경비절감, 교육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을 때

제41조(징계) 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2.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되었을 때

제42조(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정관 제7장 제2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3조(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처분 기간 및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전임교원은 승진할 수 없다.

정직: 3년, 감봉: 2년, 견책: 1년

제11장 보 칙

제4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제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장(신규임용) 제10조(연구 경력 및 교육경력 연수환산) 7호의 적용은 2005.3.1 이후 신규임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2월말, 8월말)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통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20조의 2(근속가봉)의 대상자중 2009. 3. 1부 기준 최고호봉 승급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경과기간과 상관없이 2009. 3. 1부로 근속가봉 1호봉을 적용한다.

2. 제24조(연구실적 인정범위)는 2009. 9. 1부 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 중 2012. 7. 22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중인자의 직명은 2012. 7. 22부로 조교수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 중 2012년 9월 1일 현재 조교수로 재직중인 자의 최저 승진 소요 연수는 제12조 제3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강사 기간을 포함하여 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